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



내일愛 MY JOB

사람투자

2020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

On-Tact

2020.12.7(월) - 12.18(금)

입사지원 일정
11/25 ~ 12/18

화상면접 일정
12/7 ~ 12/18

내 꿈을 위한 첫걸음

포스터 설명: 포스터는 밝은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두 명의 특성화고 학생(남학생과 여학생)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정장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은 커피를 들고 있고 남성은 briefcase를 들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내일愛 MY JOB'과 '사람투자' 로고가 있고, 중앙에는 '2020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라는 큰 제목과 'On-Tact'이라는 부제, 그리고 '2020.12.7(월) - 12.18(금)'의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좌측에는 '입사지원 일정 11/25 ~ 12/18'과 '화상면접 일정 12/7 ~ 12/18'이 적힌 구름 모양의 텍스트 박스가 있고, 우측에는 '내 꿈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소개

행사명

2020 내일愛(My job+愛)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

행사일시

2020. 12. 7(월) ~ 12. 18(금) (14일간)
입사지원 가능시기: 11/25(수) ~ 12/18(금)
화상면접 가능시기: 12/7(월) ~ 12/18(금)

행사내용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온택트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여 학생의 자기 PR 기회 제공과 함께 특화된 구인수요를 발굴 및 중소기업난 해소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5.20, ①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6.9 공포) → ②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③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 ↳ '21년 예산 97억 원(예술인 3.5만 명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수행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12월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하였고,
-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
 -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 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사업장 가입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1 사업장 성립 신고

예술인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2 사업장 변경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3 사업장 소멸 신고

폐업·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

**1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 가입 신고**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2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환·하수급인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3 사업 및 개시사업장
변경·정정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4 사업 및 개시사업장
소멸 신고**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함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은 하나,
이하 여러 차례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함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신고·납부합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 월별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까지

**3 피보험자격 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4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납부

5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6 정산보험료 납부

추가 보험료 발생하는 경우
4월 보험료에 랑산하여 부과납부



예술인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

2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함께 제출)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서울지역본부 예술 가입지원상담팀
(가입지원 4부 / 전화번호 02-2097-9250-62
/ 전자팩스 0502-223-3203)

신고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고용신채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작성·제출 가능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등)
접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EDI 이용 가능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① (사업장 성립신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②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①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③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